

# 기후변화협상의 이해

## Climate Change Negotiations

### 03 기후변화 적응과 적응 협상

저자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조연경

# 1. 기후변화 적응의 의미

기후변화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꼭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는 매년 황사,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및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장마기간이 한 달을 넘어가기도 하며 전 세계 곳곳에 큰 산불, 역대급 태풍과 사상 최악의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2001년 발간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 3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UNFCCC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와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영향을 연계시키는 주요한 개념으로 취약성과 위험도를 발표하였고,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12월 12일 채택한 파리협정에서도 취약성 평가와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도 삼고 있다. 그렇다면 취약성이란 무엇일까? 취약성에 대한 개념은 너무 넓고 모호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약성 개념]

<p>IPCC(2001)</p>	<p>IP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 즉 기후변화 영향에서 적응 역량을 뺀 나머지로 적응하였다. 취약성은 미래 배출 추세의 예측에서 시작된 기후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생물·물리적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와 이에 따른 적응 옵션들을 밝혀내는 일련의 평가 결과를 의미한다.</p> <p><b>취약성 = 영향(예상된 기후에 따른 피해) - 적응 역량</b></p> <p>취약평가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면 잘못된 적응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p> <p>그런데, 적응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탄력성(resilience)이란 무엇일까? 고무줄이 늘었다 줄어들 수 있는 탄력성처럼 기상재해 등의 영향을 받았</p>
-------------------	---

	<p>을 때 영향을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의 역량을 의미한다.</p> <p>(자료 :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 2019)</p> <p>적응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탄력성은 인간이나 도시 혹은 자연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국제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혹은 탄력성을 갖는 것이 필수이다.</p>
--	--

## 2.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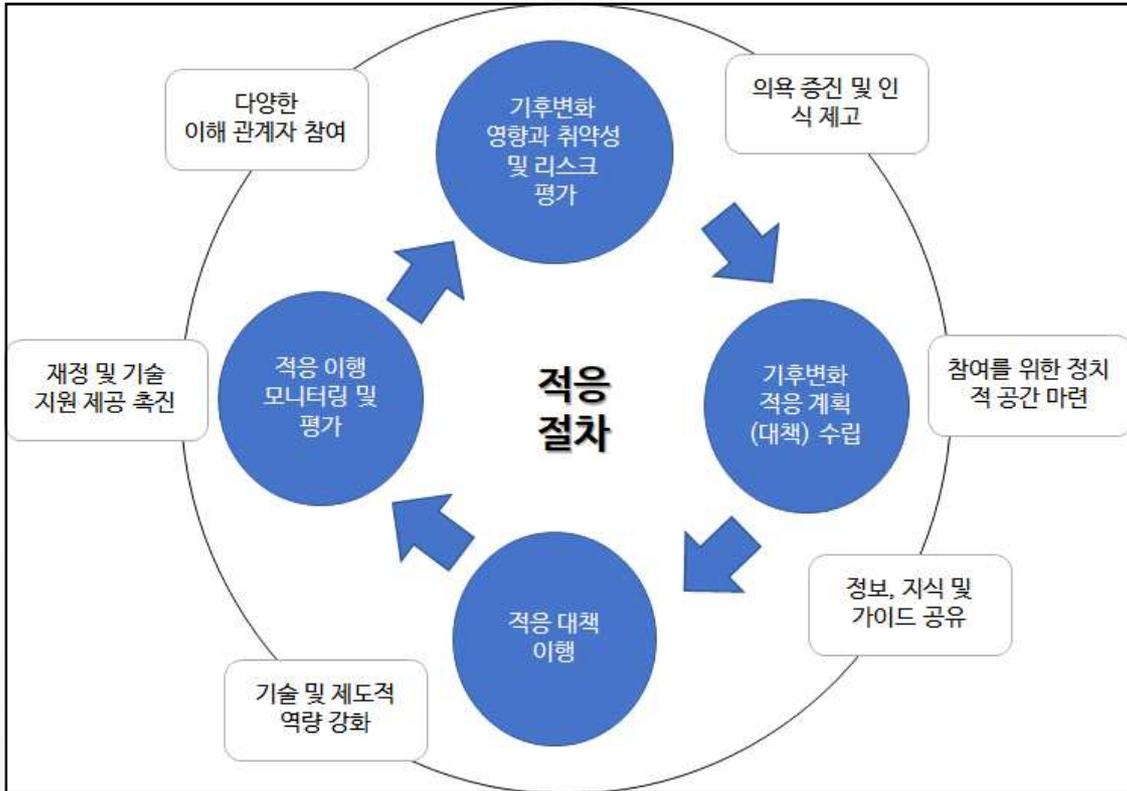
유엔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첫 출발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

또 선진국이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요구되면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대한 원칙도 세워졌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Annex I)에 포함된 42개 선진국과 부속서 2(Annex II)에 해당하는 24개 선진국으로 구별되고 이러한 부속서에 해당하는 선진국은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가 부여되었다. 처음부터 기후변화 적응이 관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약 내에서 적응의 위상은 높지 않았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을 위해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후변화 협상은 주로 감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적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고 평가에 대한 개도국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파리 협정은 우리 인류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 능력을 늘리고 기후탄력성을 키워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2가지를 전 지구적 적응 목표 (Global goal on adaptation)로 삼고 있다.

-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과 탄력성(resilience) 강화
-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관점에서 취약성(vulnerability) 줄이기

파리 협정에 근거하여 당사국은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s, NAPs), 위험도(영향·취약성 평가(Risk Assessments),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등을 통해 국가별 적응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를 하고 있다. 적응 계획 수립은 적응 방안 중에서도 국가별로 최적의 대책 및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 중복이나 잘못된 적응방식을 배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적응 절차의 모든 곳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feedback)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적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적응의 이행정도를 기록하고 확인하며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판단한다.

[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적응 절차 ]



자료 : UNFCCC

위의 그림처럼 적응 절차는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적응 이행, 적응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순환구조를 갖고 있으며 당사국의 성공적인(순조로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UNFCCC에서는 다양한 적응 관련 프로그램과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인 지원부터 인력 및 재정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부터 정보 및 지식의 공유, 역량 강화와 같은 지원도 해주고 있다.

1) UNFCCC 산하의 적응 관련 프로그램 및 조직

① 국가 적응행동 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NAPAs)  
 최빈개도국(Lowest Developed Countries, LDCs)은 유엔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매우 가난한 국가들이다. 최빈개도국은 3년마다 유엔의 관련 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에서 검토를 통해 정해지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47개국이다. 이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게 되었다. 그 결과 2001년 COP7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빈개발도상국 작업프로그램(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ork programme)이 설립되었고, 그 안에 국가적응행프로그램(NAPAs)을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 적응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빈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긴급하고 즉각적 수요에 대응한 우선순위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

술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으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최빈개도국기금(LDC Fund)이 설치되었다.

### ② 국가 적응 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s, NPAs)

그렇다면 국가 적응 계획은 무엇일까? 칸쿤적응프레임워크의 채택 이후 국가 적응 계획(NAP)은 당사국들의 중장기 적응 수요를 확인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2010년 COP16에서 수립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피해는 주로 개도국이 받고 있으며 이를 선진국에서 배상해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응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당사국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설립이 결정되었다. GCF의 역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가 적응 계획 수립 등과 같은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한다. GCF 사무국은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치하였고 20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억 달러 공여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개도국의 적응역량 강화나 적응행동 지원 부문은 현재 개별 당사국의 지원(application)과 GCF와 같은 재원기관 주도의 선별적인 심사 승인 (selective grant or concessional loan) 방식이 아니라,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후영향을 고려한 적응위원회 차원의 체계적인(centrally planned) 적응재원 분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적응역량 강화 및 적응행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응과 관련된 국가의 대책이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이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법·제도적 기반 정비 및 강화, 국가차원 위험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후 영향 및 리스크 조사·분석, 국가단위 적응 모니터링 및 대책 이행 점검·평가,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기반 마련에 관한 지원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17개 광역시·도, 226개 기초 시·군·구)에서도 지역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며 기후영향 및 취약성 등에 효과적이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 ③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AC)

2010년 COP16에서는 협약 아래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설치도 결정되었다. 적응위원회의 기능으로는 1) 당사국에 기술 지원 및 지침 제공 2) 관련 정보,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3) 시너지 창출 및 참여 강화, 4) 당사국총회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정보나 권고사항을 제공, 그리고 5) 당사국에서 전달한 적응 행동에 대한 정보를 검토 및 모니터링 한다. 적응위원회는 협약 하 적응에 대한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적응위원회는 적응보고, 국가적응계획,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적응 부문 기술검토 작업반(TEP-A) 등을 통해 적응 행동 및 작업계획의 영역에 있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모든 이슈와 주제에 대해 성을 고려하는 쟁점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④ 최빈개도국 전문가 그룹(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ert Group, LEG) 앞서 언급했던 최빈개도국 대상의 국가 적응행동 프로그램(NAPAs) 준비와 이행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와 조언제공을 위해 2001년 (decision 29/CP.7참고) “최빈개도국 작업 프로그램(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ork programme)” 채택 당시, 최빈개도국 전문가 그룹(이하 LEG)을 설립하였다. LEG는 최빈개도국의 NAP 수립 및 이행 과정, NAPAs 준비와 이행, 최빈개발도상국 작업프로그램(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work programme)의 이행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와 지원 제공하고 GCF 사무국과 협력하여 NAP 수립 및 이행 과정을 위한 GCF 기금 접근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훈련 활동 및 워크숍을 마련해주고, 기술적 페이퍼 작성을 도와주며 적응 주간이나 NAP Expo 등의 행사를 개최 등 최빈개도국이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제탑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관련 계획: Istanbul Programme of Action(2011 수립)
  - 최빈개도국의 절반 졸업 목표로 이스탄불 행동계획을 2011년에 수립
  - SB47에서 최빈개도국 졸업 대상국으로의 순조로운 전환 과정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 노정됨
  - SB 48에서 LDC 졸업이 파멸적인 절차여서 안 된다고 강조,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존에 승인한 재원의 집행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
  - SB50에서 최빈개도국 지원과 유연성, 최빈개도국 졸업 대상국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한 논의

[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전환 과정 지원 방식 ]

지원 방식	유예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LDCF(최빈개도국기금)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지원 유지</li> </ul>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DC 작업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entities)에게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해 지원 지속하길 요청(invite)</li> <li>•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관련 참석을 위한 신탁기금 지원과 UNFCCC 핵심예산(Core Budget)에의 기여 규모에 대한 유연성 적용을 최빈개도국 졸업국에게도 연장</li> <li>• LEG(최빈개도국전문가그룹)의 역량강화 지원 활동 연장</li> </ul>	최빈개도국 졸업으로부터 3년

- ※ 최빈개도국은 신탁기금으로부터 주요 당사국회의 참석비 지원 받음
- ※ 최빈개도국은 UNFCCC 핵심예산에의 기여율은 0.01% 넘지 않도록 함

⑤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Nairobi Work Programme, NWP)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Nairobi Work Programme; 이하 NWP)는 2005년 (COP11) 성립되어 2006년(COP12)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으로 명칭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9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활동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 1) 방법 및 도구 2) 자료 및 관찰 3) 기후모델링 시나리오 다운스케일링 4)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극한 현상 5) 사회경제적 정보 6) 적응계획 및 실행 7) 연구(research) 8) 적응 기술 9) 경제적 다각화

최빈국과 군서도서국들을 대상으로 영향, 취약성, 그리고 적응에 대한 이해와 평가 향상(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and assessment of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와 변동성(variability)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과학적, 기술적이며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적응 행동과 방안에 대해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이다. 그간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의 역할 강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반복되어 왔으며, 파리협정 하에서의 NWP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 3. 파리협정에서의 적응

파리협정에서 감축과 다르게 적응은 비구속적인 조항이 많고 개도국의 재량에 따라 부담(burden)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편이다. 2018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규칙(Katowice Climate Package)는 파리협정에 관한 추진방향에서 더 나아가 실천 행동이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적응과 관련한 이행 지침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항은 앞서 언급했던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s, ADCOM)이다. 이 또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보다는 당사국들이 적응 이행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암묵적 약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이행 중에 있고 이행 점검 체계도 이미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 보고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파리협정에서의 적응에 관한 조약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파리협정 내 제7조에는 신기후체제에서의 적응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파리협정 제7조 적응과 관련된 내용 ]

제 7조 적응	제7조 1항	적응에 관한 전 지구적 목표
	제7조 2~4항	전 지구적 도전 및 완화와의 관계인정
	제7조 5항	행동원칙
	개별적 노력 및 협력	제7조 3항 인정
		제7조 7~8항 협력
		제7조 9항 국가적응계획
		제7조 10~12항 적응보고
제 7조 6항, 13항	적응 지원	
제7조 14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GST, Global Stocktake)	

- ☞ 적응 목표 (7조1항) :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2조에서 언급한)적절한 적응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이라는 전 지구적(글로벌) 적응 목표를 설정
- ☞ 적응 원칙 (7조5항) : 이 조항에서는 적응행동이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커뮤니티) 및 생태계를 고려하며 국가 주도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참여주의적으로 토착민(원주민)과 여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응이 가장 최신의 적절한 과학과 원주민 등의 전통 지식과 지혜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 적응 지원 (7조 13항) : 이 조항에서는 지속적이고 강화된 국제적 지원이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도록 하는데 국제적 지원의 주체가 선진국 등의 공여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직접적인 공여 부담을 완화함. 또한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여에 대한 논의는 파리협정의 이행수단인 자원 및 기술 메커니즘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함
- ☞ 의무사항 (7조10항~12항) : 파리협정의 제 7조 10~12항에 언급된 적응보고는 적응 우선 순위, 이행 및 지원 필요성, 국가 적응 계획(NAPs) 및 행동(NAPAs) 등에 대한 보고이며 보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특히 개도국에 어떠한 부담(burden)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고하는 데에 의의를 둬. 방법으로는 국가결정기여(NDC), 국가적응계획(NAPs),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국가보고서(NC) 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단독의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공공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 1) 파리협정 내 보고 체계

기존 협약의 투명성 체계에서는 선진-개도국 간 보고 및 검토 의무 차별화의 원칙에 의해 선진-개도국 간 보고와 검토체계가 이원화되었지만 Post-2020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관장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된 후에는 파리협정에 의해 선진국과 개도국 차별 없이 모든 당사국에 공통의 보고 및 검토 의무를 적용하여 일원화된 보고 및 검토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보고서, 국가결정기여, 격년투명성보고서 등과 같이 당사국의 일원화된 보고 및 검토 체계가 있으며 적응 보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적응 보고를 통해 적응 노력을 보고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각 보고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 국가별 상황, 기후변화 관측 및 전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적응방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제4차 국가보고서, 2019년 11월 말 제출)
-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 2015년 제출하였던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은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으로 국가결정기여(NDC)으로 전환됨. 한국의 NDC에서는 적응 관련 국가의 개괄적 활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적응의 전략적 행동을 설명.
-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s, BTR) : 격년투명성보고서는 2018년 카토비체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파리협정 내 투명성 체계 지침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NDC 이행 및 달성 진전 추적 정보, 적응 관련 정보, 자원·기술·역량배양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매 2년마다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존의 격년보고서나 격년갱신보고서가 감축 중심의 보고서라면 격년투명성보고서는 파리협정 하에 강화된 투명성 체계를 위해 일원화 되었음. 격년투명성보고서에서 적응 관련 정보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 강제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국의 적응 행동 관련 조직,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위험, 취약성과 적응 관련 우선순위 및 장애 요소 등을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적응보고를 대체할 수 있음.

- 적응 보고 (Adaptation Communication, ADCOM) : 그동안 당사국의 적응 관련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는 체계가 없었는데 파리협정이 체결됨으로서 비로소 별도의 보고체계로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적응 보고의 수단(혹은 형식)으로는 국가적응계획, 국가결정기여, 국가보고서를 포함한 보고서 혹은 문서와 연계 혹은 일부로 적절히 제출과 갱신이 가능함. 적응보고는 글로벌이행점검 (GST)시 투입자료로 활용하고 글로벌 적응 목표 성과 달성(global goal on adaptation)에 대한 전체 성과 검토를 위해 글로벌이행점검 주기(2022년 6월)에 맞추어 제출하기를 권고하나 의무는 아님. 이렇게 비구속적인 적응보고는 개도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지만 적응보고를 통해 적응의 진척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적응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적응 보고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를 통해 적응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행동과 지원의 성과 추적을 위해 주로 과거 회고적(backward-looking)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됨. 제출된 적응보고는 공공등록부에 기록되며 사무국이 관리함.
- ☞ 적응 보고의 제출 시기: 파리협정에는 자세한 제출 시기가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투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5년의 주기로 확정됨.
- ☞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 지침 목적
  - 적응의 가시성과 인지도(profile) 증가 및 감축과의 균형
  - 적응행동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
  - 글로벌이행점검(GST)의 투입자료 제공
  - 적응 수요와 행동에 대한 학습 및 이해 향상

[ 적응 보고에 포함할 정보 ]

기본정보	국가상황(여건), 제도적 조직, 법적 체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위험
	적응관련 우선순위, 전략, 정책, 계획, 목표 및 행동
	개도국의 이행 및 지원 수요와 지원 제공 정보
추가정보	적응 행동 및 계획의 이행
	감축 공동편익을 포함한 적응 행동 및 경제다각화 계획
	적응행동이 다른 국제적 체제나 협약에 기여하는 정보
	성인지적 적응행동, 적응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및 지역 지식 시스템

[ 적응 보고와 관련 있는 파리협정 조항 및 결정문 ]

내용	관련 조항 및 결정문
전반적인 의무사항	파리협정 7조 10항
목적	9/CMA.1, p.1
GST에서의 역할	파리협정 7조 14항
	19/CMA.1, p.23(b), 36(c)
	9/CMA.1,p.14
원칙	9/CMA1.,p.2
방법	파리협정 7조 11항, 9/CMA1
	9/CMA1, p.10
내용	9/CMA1 Annex, p7~p9, p11~p13
제출 시기	1/CMA2, p.12

[ 적응 관련 기후변화협약 기존 보고체계 ]

보고체계	관련 결정 및 조항	설립년도	주기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 - 부속서 I 당사국	FCCC/CP/1999/7, section II	1999	매 4년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s) - 비부속서I 당사국	Decision 17/CP.8	2002	매 4년
격년보고서 (Biennial report) - 부속서 I 당사국	Decision 2/CP.17, annex I	2010/ 2011	매 2년 (2024년까지)
격년갱신보고서 (Biennial update report) - 비부속서I 당사국	Decision 2/CP.17, annex III	2010/ 2011	매 2년 (2024년까지)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As)	28/CP.7	2001	-
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 NAPs)	Decision 5/CP.17 Decision 3/CP.20 Decision 8/CP.24	2010/ 2011	-

[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신규 보고체계 ]

보고체계	관련 결정 및 조항	설립년도	주기
국가결정기여(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	Paris Agreement Art. 3 and 4 Decision 4/CMA.1 Decision 9/CMA.1 (for adaptation components) Decision 1/CP.20	2014/2018	매 5년 (2020년부터)
장기 저탄소 배출 개발 전략 (Long-term low GHG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Paris Agreement Art. 4.19	2018	-
적응보고 (Adaptation Communication)	Paris Agreement Art. 7.10-12 Decision 9/CMA.1	2015/ 2018*	유연적 (각 전지구적 이행점검 주기에 맞추길 권장)
격년투명성보고서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Paris Agreement Art. 13 Decision 18/CMA.1	2015/ 2018*	매 2년 (2024년부터)

자료 : 강상인 외(2019).

위에 표와 같이 신기후체제의 신규 보고체계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적응보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적응 노력과 재원 마련을 위해 개도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공식 협상회의가 순연됨에 따라 2020년 UN FCCC 공식협상회의 대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제52차 부속기구회의를 대신하여 준 모멘텀(June Momentum)과 제26차 당사국총회를 대신하여 2020 기후대화(2020 Climate Dialogue)를 통하여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여도 지속적인 동기(모멘텀)부여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

## ●참고 문헌

- 강상인(2019). 「기후변화 파리협정 적응보고 세부이행규칙 대응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상청 (2018). 「 이상기후 보고서 」.
- 제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 및 국내 이행방안 토론회(2020.1.15)
- 환경부(2019).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
- 환경부(2016). 「파리협정 길라잡이」.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https://kaccc.kei.re.kr/portal>)
- UNFCCC (<https://unfccc.int/>)